#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 의 안<br>번 호 | 17960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김민전・서천호・조정훈
김예지・조경태・조배숙
박상웅・이소희・최수진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임.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난임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 및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생 략) |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
|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 <후단삭제> |
| <신 설> |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 및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 |
| 2. ~ 4. (생 략) |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 <신 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 |

| | |
|---|---|
| | 를 지원하여야 한다. |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